

의안번호	제383호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충북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자	박봉순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3년 8월 28일

충북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봉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83
----------	-----

발의연월일 : 2023년 8월 28일
발의자 : 박봉순, 이상정, 김정일,
안치영, 안지윤, 조성태,
유재목

1. 제안이유

- 효율적인 대학 운영을 위하여 대학운영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 대학교 내 주요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고등교육법」 등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학운영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10조)
 - 안건 발생시 위원회 구성,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
- 대학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입학전형료 납부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수험료 → 입학전형료
- 입학금 등 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
- 입학금 및 수업료 면제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대학 시설 사용 허가 및 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제18조, 별표2)
 - 사용 가능한 시설 및 사용료 현행화

3. 의안전문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및 규정 : 붙임
- 나. 조례안예고 : 예고대상
- 다. 협의 : 충북도립대학교 협의 완료
- 라. 비용추계 : 붙임

충북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북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북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도립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충청도립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는 「교육기본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47조에 따른 교육이념과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2장 대학운영위원회

제3조(설치) 대학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의 종합발전에 관한 사항
2. 교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3. 학사행정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학의 운영과 관련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학의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과학인재국장

2. 옥천군수

3. 대학 소속 교직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나. 대학의 운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대상 안건(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자문

·연구를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3.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8조(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둔다.

③ 간사와 서기는 교직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대학회계

제11조(설치 및 운영) 대학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그 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회계를 설치·운영한다.

제12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2. 학생 또는 등록생의 입학금, 수업료 및 그 밖의 납입금
3. 평생교육기관 등록생의 수업료
4. 대학에 입학하거나 등록하려는 사람으로부터의 전형료
5. 수수료·사용료 및 불용물품 매각대금
6. 이월금
7.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8. 이자수입
9. 무형자산 및 도서 매각대금
10. 그 밖의 수입

제13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1. 인적경비
2. 교육·연구·학생지도 및 장학비
3. 운영비
4. 자산적 경비
5. 예비비 및 그 밖의 비용

제14조(입학전형료) ① 대학의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때에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에 따른 입학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입학전형료는 대학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제15조(입학금 등 결정) 입학금,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의 책정은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제16조(수업료 등 면제)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학금 및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입학금 및 수업료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입학금 및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수수료) ① 총장은 학사에 관한 각종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증명 발급에 따른 수수료(이하 “증명수수료”라 한다)는 대학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 징수한다.

② 증명의 종류와 증명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명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2. 법령에 증명수수료의 면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18조(시설 사용료) ① 총장은 개인, 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강당 등 대학의 시설에 대한 사용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학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2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비영리 목적으로 교육, 연수, 행사 등을 위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제4장 지방공무원 특별임용

- 제19조(우수졸업생의 지방공무원 특별임용) ① 총장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특별임용 요건을 갖춘 우수한 졸업생을 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지방공무원 특별임용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은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해당 기관의 결원 보충을 위한 지방공무원 특별임용시험계획 수립 시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장 평생교육원

- 제20조(설치)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 제21조(기능 및 운영) 교육원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장 감독

- 제22조(감독 및 승인) 대학의 운영·관리에 관하여는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학과의 설치 및 폐지
2. 학생 정원의 증감
3. 재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장 보칙

제2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각종 증명별 수수료표 (제17조제2항 관련)

증명구분	창 구 수수료	인터넷 수수료	무인발급 수 수 료	비고
1. 입학증명 2. 합격증명 3. 재학증명 4. 휴학증명 5. 복학증명 6. 재직증명 7. 제적증명 8. 수료(예정)증명 9. 졸업(예정)증명 10. 성적증명 11. 학적부(생활기록부)증명 12. 교육비납부증명 13. 학위수여(예정)증명 14. 교직과정이수(예정)증명	○ 국문증명 1통당 : 300원 ○ 외국문증명 1통당 : 600원	○ 국문증명 1통당 : 300원 ○ 외국문증명 1통당 : 600원 (단, 발급대행업체 수수료 1,000원 별도)	○ 국문증명 1통당 : 300원 ○ 외국문증명 1통당 : 600원	이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각종 증명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함.

[별표 2]

시설 사용료(제18조제2항 관련)

시설명	사용기준	규모	사용료(원)	비고
일반강의실	2시간	40석	10,000	
공동강의실	2시간	90석	20,000	
합동강의실	2시간	120석	30,000	
풋살장	2시간	3,082㎡	20,000	
강당	2시간	395㎡	20,000	

- 1) 1일 최대 사용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
- 2) 각 사용기준 시간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의 사용료를 적용한다.
- 3) 기준시간 초과 시 매 1시간 마다 기준 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예시) 풋살장을 1시간 사용한 경우 : 2시간 사용료(20,000원) 적용
 풋살장을 2시간 30분 사용한 경우 : 3시간 사용료(30,000원) 적용

관계법령 발췌

□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고등교육법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기에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설립자·경영자는 해당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제29조에 따라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 연구과정 및 제29조의3에 따라 통합된 학위 과정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입학금을 받을 수 없다.

③ 각 학교는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10분의 3 이상, 구성단위별 위원은 10분의 5 미만이 되도록 하고, 관련 전문가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학교를 대표하는 측과 학생을 대표하는 측이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학교의 명칭) ① 학교의 명칭은 국립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학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사립학교는 해당 학교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칭을 정할 때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종류와 다르게 대학 또는 대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19조(학교의 조직) ① 학교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② 학교의 조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국립학교는 대통령령과 학칙으로 정하고, 공립학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학칙으로 정하며, 사립학교는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과 학칙으로 정한다.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一般銓衡)이나 특별전형(이하 “입학전형”이라 한다)에 의하여 입학할 학생을 선발한다.

제34조의4(입학전형료) ①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이하 이 조에서 “대학의 장”이라 한다)은 같은 항에 따른 입학전형에 응시하는 사람에게 입학전형료를 받을 수 있다.

② 대학의 장은 전년도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 내역 및 모집인원 대비 지원인원 등을 고려하여 입학전형료를 정한다. 이 경우 입학전형료 결정의 기준이 되는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③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 중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④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인하여 입학전형료를 납부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전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⑤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마친 후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47조(목적) 전문대학은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대학회계) ① 국립대학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그 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국립대학에 제4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과 대학의 자체수입금을 통합·운영하는 대학회계를 둔다.

② 대학회계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전입금

③ 대학회계의 자체수입금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교육과정, 공개강좌, 산업체 위탁교육, 전공심화과정, 시간제 등록 등에 따른 학생 또는 등록생의 입학금, 수업료 및 그 밖의 납입금
2.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록생의 수업료
3. 해당 대학에 입학 또는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의 전형료
4. 대학원의 논문심사료

5. 수수료·사용료 및 불용물품 매각대금
6. 이월금
7.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8. 이자수입
9. 무형자산 및 도서매각대금
10. 제26조제3항에 따라 귀속된 국유재산 처분 수입금
11. 그 밖의 수입

④ 대학회계의 세출은 국립대학의 교육·연구·봉사활동 및 대학 운영과 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경비로 한다.

⑤ 대학회계의 회계연도는 그 해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종료한다.

⑥ 국립대학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회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발전기금의 회계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대한 종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

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